

【 8 】 양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

발의년월일 : 2000. 2. 7

발 의 자 : 김완수의원의외 2인

□ 제안이유

○ '99년 8월31일 법률 제6002호로 지방자치법이 개정되고 '99년 12월31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 연1회 정기회 제도가 연 2회 정례회 제도로 변경되어 개정된 법령에 맞게 정례회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.

□ 주요골자

가.정례회는 매년 2회 개최함(안제2조).

나.정례회의 회기는 연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규정함(안제3조).

다. 제1차 정례회는 6월20일에 집회하고, 제2차 정례회는 12월5일에 집회하되 다만, 그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하며 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정례회는 회의의 의결로 7월 또는 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도록 함(안제4조).

라. 제1차 정례회에서는 행정사무감사와 결산안의 승인, 제2차 정례회에서는 예산안을 의결토록 함(안제5조).

양주군 조례 호

양주군의회정례회의운영에관한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(이하“법”이라 한다) 제38조 및 동법시행령(이하 “령” 이라 한다)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양주군의회(이하 “의회” 라 한다) 정례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개최) 의회는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를 매년 2회 개최한다.

제3조(회기) 법 제41조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35일 이내로 한다.

제4조(집회) 영 제19조의4의 규정에 의한 정례회의 집회일은 다음 각호와 같다

다만,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날에 집회한다.

1.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20일에 집회한다. 다만, 총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제1차 정례회는 의회의 의결로 7월·8월중에 따로 정할 수 있다.
2.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2월 5일에 집회한다.

제5조(심의) ①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제3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법제125조 규정에 의한 결산안의 승인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

②제2차 정례회에서는 법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예산안의 의결 및 기타 의회의 부의안건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6조(준용)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 이외의 정례회의 운영·의사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회의규칙을 준용한다.

부 칙

- ① 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- ② (다른조례의 개정) 양주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제2항중 “정기회” 를 “제1차 정례회” 로 한다.